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원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21 발의연월일: 2025. 4. 29.

발 의 자:김원이・위성곤・김남근

곽상언 · 신정훈 · 이해식

서영석 · 김동아 · 김태선

이정문 · 이소영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우리나라 김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끌며 2023년부터 2년 연속 연수출액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고 수출기록을 세우며 'K-푸드'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.

해양수산부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지난 2022년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(재)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지정하여 관련 연구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, 현장에서는 김산업의 종합적인 연구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별도의 국가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마른김 업체의 82%가 상시직원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으로, 소규모·영세 업체가 많은 특성상 품질향상 및 생 산 자동화를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실정임. 또한 온난화로 인한 수 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김의 종자개발 및 신품종 개발 이 아직 미흡한 상황임. 수출시장 역시 미국과 일본 위주로 편중돼있 어 장기적 관점의 수출확대 전략 수립 및 실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옴. 아울러 생산지역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종사자 확보 및 전문 인력 훈련 및 양성도 요구되는 실정임.

이에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0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한국김산업진흥공사의 설립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공 사(이하 "김산업공사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 - ② 김산업공사는 법인으로 하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③ 김산업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개발
 - 2.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(出捐), 투자 유치 지원
 - 3.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의 연구ㆍ개발
 - 4.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
 - 5.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
 - 6. 김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 · 연구 및 모니터링
 - 7. 김산업 클러스터 구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
 - 8.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

- 9.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
- 10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- ④ 국가는 김산업공사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김산업공사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산업공사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⑥ 김산업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⑦ 이 법에 따른 김산업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김산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8 그 밖에 김산업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(제28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벌칙

제28조(과태료) 제1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김산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의2(한국김산업진흥공사의 설립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김 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 국김산업진흥공사(이하 "김산 업공사"라 한다)를 설립한다. ② 김산업공사는 법인으로 하 고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 ③ 김산업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1.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 한 정책의 수립·개발 2.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에 대한 투자 또는 출연(出 捐), 투자 유치 지원 3.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의 연구·개발 4.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 5.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 항

- 6. 김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모니터링
- 7. 김산업 클러스터 구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
- 8.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· 훈련
- 9.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확 산을 위한 홍보 사업
- 10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과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 산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
- ④ 국가는 김산업공사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-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각호의 김산업공사의 업무를 지도·감독하며,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김산업공사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⑥ 김산업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신 설> <신 설>

- ⑦ 이 법에 따른 김산업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김산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하지 못한다.
- 8 그 밖에 김산업공사의 설립 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 벌칙

제28조(과태료) 제1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한국김산업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